

오 키 나 와 현 긴 급 사 태 선 언

기존 기간 : 2021년 1월 20일~2월 7일

연장 기간 : 2021년 2월 8일~2월 28일

【현민·사업자·방문자 여러분에게 드리는 의뢰사항】

1. 외출 자제 요청

의료기관 통원, 식료품·의약품·생활필수품의 구매, 필요에 의한 출근, 심신의 안정이나 운동, 산책 등 생활이나 건강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외출하지 않도록 요청합니다.

특히 밤 8시 이후의 불필요한 외출은 철저히 자제하도록 요청합니다.

2. 영업시간 단축 요청 등

현 내 모든 시정촌의 음식점 및 유흥시설 등에 다음과 같이 영업시간을 단축하도록 요청합니다. 대상 기간 동안 요청에 응해주신 사업자에게는 점포마다 협력금을 지급합니다.

(1) 2월 7일까지의 영업 단축 요청 (1/19 부로 발령됨(재공지))

①대상시정촌: 모든 시정촌

②영업시간: 아침 5시부터 밤 8시 사이

(주류의 제공은 아침 11시부터 밤 7시까지)

③대상업종: 음식점 및 유흥시설 등(※1)

④요청기간: 1월 22일(금)~2월 7일(일) 17일간

⑤협 력 금: 68 만 엔(17일 모든 기간 요청해 응한 경우)

(2) 2월 8일 이후의 단축 영업 요청(오늘(2/4 부로)발령)

①대상시정촌: 모든 시정촌

②영업시간: 아침 5시부터 밤 8시 사이

(주류의 제공은 아침 11시부터 밤 7시까지)

③대상업종: 음식점 및 유흥시설 등(※1)

④요청기간: 2월 8일(월)~2월 28일(일) 21일간

* 긴급사태선언의 해제가 앞당겨지는 경우, 그 날까지로 한다.

⑤협 력 금: 84 만 엔(21일 모든 기간 요청해 응한 경우)

* 긴급사태선언의 해제가 앞당겨지는 경우, 그 날까지의 협력금을 산정해 지급한다.

(※1) 유흥시설이란 카바레, 나이트클럽, 라이브하우스, 스낵, 댄스 홀, 펍 등으로, 식품위생법상의 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자입니다.

3. 타 현과의 왕래

국가 긴급사태선언이 발령된 지역은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 제 45조 제 1항에 따라 불필요한 외출 자제를 요청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역과의 불필요한 왕래는 자제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또한, 각 도도부현 독자 긴급사태선언이 발령된 지역과도 불필요한 왕래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상기 지역에서 필요에 의해 방문해 주시는 경우에는 가급적 본 현에 도착하기 전에 PCR 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아 주십시오. 또한, 방문 전에 PCR 검사를 받지 못한 분이 나하공항 도착 시에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NAPP(Naha Airport PCRtest Project)"을 도입하였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건강관찰을 할 것과 감염방지대책을 철저히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 1) 국가 긴급사태선언 대상 지역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왕래 자제의 대상이 됩니다(2월 8일 시점 : 10도부현(도쿄도·지바현·사이타마현·가나가와현·오사카부·교토부·효고현·아이치현·기후현·후쿠오카현)).

(※ 2) 각 도도부현 독자 긴급 사태선언이 발령된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왕래 자제의 대상이 됩니다(2월 4일 시점 : 5현(이바라키현, 미에현, 나가사키현(나가사키시), 구마모토현, 미야자키현)).

4. 이도(離島)와의 왕래

이도와의 불필요한 왕래는 자제를 요청합니다.

5. 기본적인 감염 대책을 철저히

일상생활에서「3개의 밀」(밀폐·밀집·밀접)을 철저히 피하는 것과 동시에, 마스크, 손 씻기, 체온 측정, 정기적인 환기 등 「새로운 생활양식」을 엄수해 주십시오.

고령자 및 증상이 있는 가족과 접촉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십시오.

6. 직장에서의 대책

체온 관리를 철저히 하고, 컨디션이 좋지 않으신 분은 출근하지 않도록·출근시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재택근무나 원격회의, 시차출근을 추진해 출근 인원을 평소의 30% 정도로 감소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염 위험이 높아지는「5가지 상황」을 피하는 등 통근, 업무시의 밀(密)을 막기 위해 철저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직장에서의「자리 이동」(휴게실, 탈의실, 흡연실 등)에 주의해 주십시오.

※1 5가지 상황이란, 상황①「음주를 포함하는 친목 모임 등」, 상황②「많은 인원이 장시간에 걸쳐서 식사」, 상황③「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대화」, 상황④「좁은 공간에서 공동생활」, 상황⑤「자리 이동」입니다.

7. 이벤트 개최 제한

이벤트 개최 규모 등은, 다음 내용대로 합니다.

개최규모: 5,000명 이하

수용률: 실내 50% 이하

실외 사람 사이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가능한 한 2m)

또한, 가능한 한 온라인 개최나 감염방지대책을 강구한 상태에서 분산 개최 또는 규모를 축소 한 뒤에 개최를 요청합니다.

8. 프로야구, 그 외 경기단체 등의 캠프·합숙의 수용

프로야구구단이나 J리그 소속 클럽, 그 외 스포츠 경기 단체 등의 캠프·합숙 수용에 있어서, 각 구단·클럽 관계자(선수, 스태프를 포함) 및 캠프 관련 취재를 예정하고 있는 언론사 여러분에게 오키나와현 도착 이전에 PCR 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는 것을 전제하도록 요청합니다.

수용 시정촌 및 사업자에게는 캠프 실시 장소에서 감염방지대책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캠프 기간중에도 정기적인 PCR 검사 혹은 항원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긴급사태선언 기간중에는 연습시합 및 연습을 무관중으로 할 것과 더불어, 언론사 여러분의 취재활동은 필요 최소한으로 할 것을 요청합니다.

9. 시설 영업시간 단축의 부탁 말씀

다음 시설에 대해 밤 8 시까지로 영업시간 단축(주류 제공은 아침 11 시부터 밤 7 시까지)을 부탁드립니다.

- 극장, 관람장, 영화관 또는 연예장
- 집회장 또는 공회당
- 전시장
- 1,000 m²를 초과하는 물품판매업을 경영하는 점포(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그 밖의 위생용품, 재생의료 등의 제품 또는 연료 그 외 생활에 필수적인 물품으로서 후생노동청대신이 정한 물건의 판매처는 제외)
- 호텔 또는 여관(집회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
- 운동시설, 유기장
- 박물관, 미술관 또는 도서관
- 유흥시설 중, 식품위생법으로 지정한 음식점영업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
- 1,000 m²를 넘는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점포(생활 필수 서비스를 제외)

【학교·사회복지시설·각 공공시설 등】

1. 학교 관련

현립 학교는 학습의 기회를 보장하는 관점에서, 감염확대방지대책을 철저히 하며 교육 활동을 계속합니다.

부활동, 과외활동, 학생 기숙사의 감염방지대책을 철저히 합니다.

시정촌 및 사립학교(대학 등은 제외)는 현립 학교와 같은 대응을 요청합니다.

대학 등에서는, 감염방지과 대면 수업, 원격수업 등으로 학습 기회 확보의 양립을 위해 적절한 대응을 요청합니다.

대학에서 열리는 친목회 등에 대해서는 학생 등에게 주의 환기를 요청합니다.

2. 사회복지시설

보육소나 간호노인복지시설등은 감염방지대책을 철저히 하는 것을 원칙으로 개소를 요청합니다.

3. 공공시설 등

박물관, 미술관이나 운동시설 등, 현립 공공시설은 감염방지대책을 철저히 하며 운영을 계속하되, 운영시간은 밤 8 시까지로 합니다.

또한, 감염방지대책 관점에서 시설에 따라서는 일부 서비스의 제한 및 인원수 제한을 실시합니다.

시정촌립의 공공시설에는 현과 같은 대응을 요청합니다.

◎ 위 내용은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법 제 24 조 제 9 항 및 오키나와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조례에 따른 협력 의뢰입니다.